

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·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(안 1-5-3-2, 4-3-2-10)
용도별 소요면적, 토지이용계획의 조정 범위를 기존 30%에서 총량 범위 내로 완화하는 등 도시·군관리계획의 유연성을 확대하고, 지침 내 상충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

3. 의견제출

「도시·군관리계획수립지침」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도시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-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-2동
- 팩스 : 044-201-5569
- 전자우편 : ganjones72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> 정책자료> 법령정보> 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(044-201-37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